## 사례

## 진단서 없는 병가사용 6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.

병가관련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

-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이 말을 각각 달리 해석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

상황은 이렇습니다

A가 진단서 첨부한 병가를 7일 사용했습니다. 그 이후 A가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를 이용하려고 하니

¬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고 ㄴ은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는 따로 취급하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

¬과 ∟ 중 누구의 말이 맞나요?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있어 헷갈려 질의드립니다.

2022-04-20

## 답변

- 1.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(신청번호 1AA-2204-0592187)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- 2. 귀하의 민원내용은 "병가"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3.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.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, 국가공무원은 병가 일수가 "연간 6일을 초과"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병가 사용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나. 즉, 진단서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누계 6일이 산정되므로, 처음부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여 이후 사용하는 병가부터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을 알

려드립니다.

4.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복무과 박혜선(☎044-201-8446)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2022-05-02

담당부서 복무과

관련법령

인쇄

목록